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0.

발 의 자 : 김위상 · 우재준 · 박충권
최은석 · 김선교 · 신성범
추경호 · 이인선 · 김형동
박정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
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
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
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
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지도 및 에너지손실요인의
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일 수 있고 기술
발전 및 시장 반응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,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
대한 에너지진단 및 개선명령이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
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
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

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,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은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,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,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등).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1항제5호 중 “제15조제5항”을 “제15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,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다.

제69조제3항제3호 중 “제15조제3항”을 “제15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76조제2호 중 “제15조제3항”을 “제15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78조제3항 중 “제15조제4항”을 “제15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5조(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.
③ ~ ⑤ (생략)	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제24조(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,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	제24조(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1. ~ 4. (생 략) 5. 제15조제5항,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(생 략) 제34조(개선명령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,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② (생 략) 제6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. ② (생 략)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	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제15조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34조(개선명령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이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,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제6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---	--

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·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

4. ~ 14. (생략)

제7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2.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

3. ~ 8. (생략)

제78조(과태료) ①·② (생략)

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제15조제4항-----

4. ~ 14. (현행과 같음)

제76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15조제4항-----

3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78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5조제5항-----

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· ⑤ (생 략)
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